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0월 2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10월 14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10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산림과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의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정하여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규정(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옥)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1]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4. 10. 2.
- 회부일자 : 2024. 10. 14.
- 상정일자 : 2024. 10. 14.

2. 제안이유

- 상위법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할 경우의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정하여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규정(안 제2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서 군수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관리대행자에게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상위법에서 위임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정하여 공·사유림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2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서 관내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정함.

5. 종합검토의견

- 상위법에서 위임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규정하여 업무의 관리를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공·사유림의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수수료는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였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이하 “관리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
3.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3조의4제 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신설 2023. 7. 26.>

수수료의 범위(제25조의6 관련)

사업비	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붙임 2]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48
----------	-----

제출년월일 : 2024.10. 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 할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 하여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을 효과적으로 수행

2. 주요내용

조례제정 목적,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안 제1조,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25년 예산에 437,000천원 반영요청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8. 7. ~ 2024. 8.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4-1146호, 산림과-2156(2024. 8. 6.)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실-9238(2024. 6. 17.)호]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기획실-9238(2024. 6. 17.)호]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1044(2024. 7. 4.)호]

5) 법제심사 : 적정[기획예산과-123(2024. 9. 13.)호]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4934(2024. 9. 26.)호]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그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제2조 관련)

사업비	수수료
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
700억원 초과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붙임1]

관계법령 발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이하 “관리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 발생
 - 관련조문 : 조례(안) 제2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시행에 따른 위탁수수료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위탁수수료 2025년도 조림·숲가꾸기 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산출기초	비고
총소요액	437,000천원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위탁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조림, 숲가꾸기 위탁 대행 수수료 · 4,550,000천원(조림 1,200,000, 숲가꾸기 3,350,000) x 96/1,000 ≒ 437,000천원	

※ 당해연도 사업량에 따라 위탁수수료 증감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 조달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산림과장 이 성 모
연락처	(033) 330 - 24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437,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2,197,000
위탁수수료	437,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2,197,000
재원 조달	437,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2,197,000
의 존 재 원	소 계	-	-	-	-	-
	보조금	-	-	-	-	-
	지방교부세	-	-	-	-	-
자 체 수 입	소 계	437,000	440,000	440,000	440,000	2,197,000
	지방세	-	-	-	-	-
	세외수입	-	-	-	-	-
	군비	437,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